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3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김미애·김예지·박상웅

인요한 · 강승규 · 박준태

김종양 • 박수민 • 김성원
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·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음.

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,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 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(이하 "사고기록추출장 치")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.

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 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 장하고,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

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,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·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의 제목 중 "정보제공"을 "정보제공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의 규정"을 "제4항까지"로, "등"을 ", 사고기록추출장치의 판매 등"으로 한다.

④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 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(이하 "사고기록추출장치"라 한다) 를 공급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4(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에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(이하 "페달영상기록장치"라 한다)를 장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하지 아 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고기록추출장치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(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제29조의3(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) ① ~ ③ (현 및 정보제공) ① ~ ③ (생 략) 행과 같음) <신 설> ④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은 구 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 는 장치(이하 "사고기록추출장 치"라 한다)를 공급하여야 한 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⑤ -----제4항까지----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 착기준, 장착사실의 통지, 기록 정보의 제공방법,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등 필요 -----, 사고기록추출장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치의 <u>공급 등</u>-----정하다. <신 설> 제29조의4(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자동차제작 • 판매자등에 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 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 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~ 19. (생략)

장하는 기록장치(이하 "페달영 상기록장치"라 한다)를 장착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9조(벌칙)	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제2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

5. ~ 19. (현행과 같음)